| 투자위험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KCGI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KCGI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KCGI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B3228)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주)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cgiam.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3. 7. 21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3. 11. 9**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개시(2015년 5월 26일)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매사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차


<요약정보> ..... 5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9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9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9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 9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9
5. 인수에 관한 사항 ..... 9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10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1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11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11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 12
4. 집합투자업자 ..... 13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13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14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15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15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18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20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 23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26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28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32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37
1. 재무정보 ..... 37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40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43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48
1. 집합투자업자의 관한 사항 ..... 48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 50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50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53**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53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56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56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59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60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60

[참고] 펀드용어정리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으니 실제 투자되는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동 증권(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및 예비포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 2023.7.21)

# KCGI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B3228)

| 투자위험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합니다. 특히 높은 성장성과 잠재력을 가진 유망한 중소형 주식에 집중·장기투자하여 **중소형주 집중투자위험이 있으며,**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KCGI 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 | |
|---|---|
|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며, 철저한 펀더멘탈 리서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구조와 우수한 경영진을 지닌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고 장기 투자하고자 합니다. 또한 철저한 펀더멘탈 리서치를 통해 수립한 종목별 투자전략을 바탕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높은 성장성과 잠재력을 가진 유망한 중소형 주식에 집중·장기투자합니다. |
| **분 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

**투자비용**

| 클래스 종류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 | | | |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 | | | |
|---|---|---|---|---|---|---|---|---|---|---|
| | 판매수수료 | 총보수 | 판매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총보수 ·비용 | 1 년 | 2 년 | 3 년 | 5 년 | 10 년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 납입금액의 1.0%이내 | 1.39% | 0.6% | 1.36% | 1.3947% | 242 | 388 | 540 | 860 | 1,766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 없음 | 2.09% | 1.3% | 1.58% | 2.09% | 215 | 436 | 663 | 1,137 | 2,445 |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 납입금액의 0.5%이내 | 1.09% | 0.3% | 1.01% | 1.0947% | 162 | 278 | 398 | 653 | 1,383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 없음 | 1.29% | 0.5% | 1.19% | 1.2947% | 133 | 270 | 413 | 714 | 1,569 |

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으며 미설정된 종류 C1(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보수체감형)의 경우 비교대상 종류의 기타비용등을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라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 단순히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종류 A(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과 종류 C1(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5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수수료선취-온라인)형과 종류 Ce(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4 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28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2023.6.30 기준)**

**주 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의 경우 수수료 및 총보수표시는 1 년차 기준으로 보수율을 작성하였으며, 종류 C2(가입 2 년차) 판매보수 연 1.15%, 총보수 연 1.94%, 종류 C3(가입 3 년차) 판매보수 연 0.8%, 총보수 연 1.59%, 종류 C4(가입 4 년차) 판매보수 연 0.7%, 총보수 연 1.49% 입니다. 종류 C1(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수익증권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 1 년 단위로 종류 C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종류 C3(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종류 C4(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수익증권으로의 전환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 종류 | 최초설정일 | 최근 1 년 | 최근 2 년 | 최근 3 년 | 최근 5 년 | 설정일이후 |
|---|---|---|---|---|---|---|
| | | 22.07.22 | 21.07.22 | 20.07.22 | 18.07.22 | |

| | | ~ 23.07.21 | ~ 23.07.21 | ~ 23.07.21 | ~ 23.07.21 |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 2015-06-01 | 11.85 | -7.07 | 9.32 | 7.44 | 2.89 |
| **비교지수**(%) | 2015-06-01 | 6.07 | -9.68 | 7.13 | 2.58 | 1.33 |
| **수익률 변동성**(%) | 2015-06-01 | **16.09** | **17.66** | **17.83** | **19.35** | **19.45** |

주1) 비교지수 : **[KOSPI 대형주지수] x 30% + [KOSPI중형주지수 x (W*) + KOSPI소형주지수 x (1-W)] x 70%**

*W = KOSPI중형주 시가총액 / (KOSPI중형주 시가총액 + KOSPI소형주 시가총액)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2023.10.23 기준)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동종집합투자기구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 | | | | 운용 경력년수 |
|---|---|---|---|---|---|---|---|---|---|
| | | | 집합투자기구 수 | 운용규모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최근 1 년 | 최근 2 년 | 최근 1 년 | 최근 2 년 | |
| 김형석 | 1987 | 책임(차장) | 33 개 | 11,359억원 | 14.74% | -7.58% | 14.51% | -7.75% | 5년 |
| | | |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 | | | | | |
| | | | 3 개 | 186억원 | | | | | |
| 이가영 | 1996 | 부책임(대리) | 1 개 | 53억원 | - | - | | | 2 개월 |
| | | |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주 1)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이 운용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동종집합투자기구 운용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률 왜곡이 있을 수 있어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주 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투자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시장위험 |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 |
|---|---|---|
| | 주식가격 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주식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주식가격은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중소형주 집중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중소형주에 집중 투자하므로 대형주에 주로 투자하거나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고르게 분산투자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에 비해 변동성이 클 수 있고,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더 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
| | 환매제한위험 |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 주1) 주요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매입 방법** | ·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이전<br>: **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br>·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경과 후<br>: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환매 방법** | ·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이전<br>: 제 2 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제 4 영업일 지급<br>·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경과 후<br>: 제 3 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제 4 영업일 지급 |
| **환매수수료**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기준가격** | 산정방법 |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br>-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cgiam.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

**과세**

| 구 분 | 과세의 주요내용 |
|---|---|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 **수익자** |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인 종류형의 경우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세제혜택의 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 | | | | | | |
|---|---|---|---|---|---|---|
| C1(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br>최초가입 | → | C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br>종류 C1(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br>보유기간 1년 경과 | → | C3(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br>종류 C1(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br>보유기간 2년 경과 | → | C4(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br>종류C1(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br>보유기간 3년 경과 |

※ 전환 관련 기타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집합투자업자** |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주) (TEL. 02-6320-3000)** | | |
|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 **모집(매출) 총액** | 10 조좌<br>(단,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 |
| **효력발생일** | **2023. 11. 9** | **존속 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kcgiam.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조 | | |
| **참조** |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48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종류(Class)** |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판매 수수료** | **수수료 선취(A)**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5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 년 5 개월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수수료선취-온라인형(Ae)의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4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므로, 약 2 년 4 개월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수수료 후취** |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수수료 미징구(C)**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또는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5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 년 5 개월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의 경우 판매수수료선취-온라인형(Ae)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4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므로, 약 2 년 4 개월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온라인형(Ae)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판매 경로** | **온라인 (e)**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 **온라인 슈퍼(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보수체감 (CDSC)** |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
| | **무권유저비용 (G)** |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개인연금 (P)** |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 |
| | **퇴직연금 (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고액(I)** | 고액거래자(종류 CI[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최초 납입금액이 20 억원 이상, 종류 S-I[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펀드 등(F)**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랩(W)** | Wrap account 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팀(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cgi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cgiam.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cgiam.com)**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명 칭 | **KCGI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 B3228 ) | | | | | | | | | |
|---|---|---|---|---|---|---|---|---|---|---|
| (종류)클래스 | 종류A | 종류Ae | 종류C1 | 종류C2 | 종류C3 | 종류C4 | 종류Ce | 종류CI | 종류CF | 종류CW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 수수료선취-온라인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등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B3230 | B3232 | B3234 | B3236 | B3237 | B3238 | B3240 | B3242 | B3243 | B3244 |
| (종류)클래스 | 종류S | 종류C-P | 종류C-P2 | 종류S-P | 종류S-I | 종류C-Pe | 종류C-Pe2 | 종류AG | 종류CG | 종류S-P2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B3245 | B3246 | B3247 | B3248 | B3249 | BT475 | BT368 | BP308 | BP238 | D3383 |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집합투자기구)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X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단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모집개시(2015년 5월 26일)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매사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cgiam.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집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명 칭 | **KCGI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 B3228 ) | | | | | | | | | |
|---|---|---|---|---|---|---|---|---|---|---|
| (종류)클래스 | 종류A | 종류Ae | 종류C1 | 종류C2 | 종류C3 | 종류C4 | 종류Ce | 종류CI | 종류CF | 종류CW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 수수료선취-온라인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등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B3230 | B3232 | B3234 | B3236 | B3237 | B3238 | B3240 | B3242 | B3243 | B3244 |
| (종류)클래스 | 종류S | 종류C-P | 종류C-P2 | 종류S-P | 종류S-I | 종류C-Pe | 종류C-Pe2 | 종류AG | 종류CG | 종류S-P2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B3245 | B3246 | B3247 | B3248 | B3249 | BT475 | BT368 | BP308 | BP238 | D3383 |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변경시행일** | **주요내용** |
|---|---|
| 2015. 6. 1 | 최초설정 |
| 2016. 6. 16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제2항제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b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br>-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에 따른 변경)<br>-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 등 |
| 2016. 7. 2 |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 |
| 2016. 7. 30 | - 국내 증권시장의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판매 및 환매의 기준시점 변경 |
| 2017. 1. 5 | - 주식운용팀의 공동운용방식으로 변경<br>- 최근 회계연도 6개월 경과에 따른 반기실적 기재 등 |
| 2017. 4. 29 | - 집합투자규약 변경(종류AG, 종류CG 신설)<br>-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연금계좌세액공제) |
| 2017. 6. 16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제2항제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등 |
| 2017. 7. 27 | - 집합투자규약 변경(종류C-Pe, 종류C-Pe2신설 등) |
| 2018. 5. 25 |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등 |
| 2018. 6. 18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제2항제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br>- 최근 펀드결산(설정된 후 3년이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 등급 산정기준 변경(투자대상 자 |

| | |
|---|---|
| | 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 등 |
| 2018. 9. 21 |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등 |
| 2019. 6. 18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제2항제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br>- 최근 펀드결산에 따른 펀드의 변동성 변경 등 |
| 2019. 9. 16 |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 |
| 2019. 12. 27 |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b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
| 2020. 4. 1 | - 집합투자규약 변경(종류S-P2신설 및 환매수수료 삭제)에 따른 정정 등 |
| 2020. 6. 16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br>-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br>- 최근 펀드결산에 따른 펀드의 변동성 변경<br>-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등 |
| 2021. 6. 22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br>- 최근 펀드결산에 따른 펀드의 변동성 변경<br>-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 |
| 2022. 7. 29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상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br>- 최근 펀드결산에 따른 펀드의 변동성 변경<br>-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내용 반영(보수 및 수수료 관련 작성지침 내용에 따른 일부 사항 반영) 등 |
| 2022. 11. 1 |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에 따른 변경 |
| 2022. 12. 30 | - 기존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을 책임운용전문인력(김홍석)으로 변경 |
| 2023. 8. 18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br>-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내용 반영<b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br>- 최근 펀드결산에 따른 펀드의 변동성 변경<br>-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br>- 대주주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사명,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및 주소지 변경 등 |
| 2023. 11. 9 | - 운용전문인력 변경에 따른 정정 |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집합투자업자

| | |
|---|---|
| 회사명 |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One IFC 15층<br>(대표전화 : 02-6320-3000) |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가. 운용전문인력

(2023.10.23 기준)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 | | | | 운용 경력 년수 | 주요이력사항 |
|---|---|---|---|---|---|---|---|---|---|---|
| | | | 집합투자기구 수 | 운용규모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 최근 1 년 | 최근 2 년 | 최근 1 년 | 최근 2 년 | | |
| 김형석 | 1987 | 책임(차장) | 33 개 | 11,359억원 | 14.74% | -7.58% | 14.51% | -7.75% | 5 년 |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 주식운용팀 매니저/애널리스트(현재)<br>-한국투자증권 법인영업부 |
| | | |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 | | | | | | |
| | | | 3 개 | 186억원 | | | | | | |
| 이가영 | 1996 | 부책임(대리) | 1 개 | 53억원 | - | - | | | 2 개월 |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주식운용팀 매니저/애널리스트(현재)<br>-케이씨지아이대체투자운용 멀티전략본부 |
| | | |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이 운용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식운용팀의 공동운용방식으로 운용되며, 따라서 책임(부책임)운용전문인력의 변경으로 인해 동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이 변동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 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동종집합투자기구 운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률 왜곡이 있을 수 있어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주6)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나. 책임운용전문인력의 최근 변경 내역

| 운 용 기 간 | 책임운용전문인력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
| 2015. 6. 1 ~ 2017. 1. 4 | 2015. 6. 1 ~ 2018. 5. 24<br>권오진 | - | - |
| 2017. 1. 5 ~ 2018. 5. 24 | | 2017. 1. 5 ~ 2018. 9. 20<br>김태희 | |
| 2018. 5. 25 ~ 2018. 9. 20 | 2018. 5. 25 ~ 2019.12.26<br>김홍석 | | - |
| 2018. 9 .21 ~ 2019.12.26 | | 2018. 9 .21 ~ 2023.11.8<br>김형석 | - |

| | | | |
|---|---|---|---|
| 2019.12. 27 ~ 2022.10.31 | 2019.12. 27 ~ 2022.12.29<br>박정임 | | |
| 2022.11.1 ~ 2022.12.29 | | | 2022.11.1 ~ 2022.12.29<br>김홍석 |
| 2022.12.30 ~ 2023.11.8 | 2022.12.30 ~ 2023.11.8<br>김홍석 | | - |
| 2023.11.9 ~ 현재 | 김형석 | 이가영 | - |

주1) 작성기준일기준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류(Class) |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판매 수수료 | 수수료 선취(A)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5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 년 5 개월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수수료선취-온라인형(Ae)의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4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므로, 약 2 년 4 개월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수수료 후취 |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수수료 미징구(C)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또는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5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 년 5 개월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의 경우 판매수수료선취-온라인형(Ae)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4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므로, 약 2 년 4 개월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온라인형(Ae)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판매 경로 | 온라인 (e)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 온라인 슈퍼(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보수체감 (CDSC) |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
| | 무권유저비용(G) |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개인연금 (P) |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 |
| | 퇴직연금 (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 **고액(I)** | 고액거래자(종류 CI[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최초 납입금액이 20 억원 이상, 종류 S-I[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펀드 등(F)**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랩(W)** | Wrap account 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높은 성장성과 잠재력을 가진 유망한 중소형 주식에 집중·장기투자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대상*

| 투자대상* | | 투자한도 | 주요내용 |
|---|---|---|---|
| ① | 주식 | 60% 이상 |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하며, 이하 "주식"이라 한다) |
| ② | 채권 | 40% 이하 |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
| ③ | 자산유동화증권 | 40% 이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
| ④ | 어음 | 40% 이하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 등"이라 한다) |
| ⑤ | 장내파생상품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자산총액의 10%이하 |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
| ⑥ | 장외파생상품 | |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
| ⑦ | 집합투자증권 | 40% 이하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 |

| | | | |
|---|---|---|---|
| | | | 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
| ⑧ | 환매조건부매도 | 50% 이하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 하는 것으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
| ⑨ | 증권의 대여주1) | 50% 이하 |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
| ⑩ | 증권차입주2) | ①~④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 |
| ⑪ |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 | | |

* 투자신탁재산의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함을 의미한다.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것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내지 ④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내지 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② 및 ④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구분 | 내용 | 적용 제외 |
|---|---|---|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br>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 |

| | | |
|---|---|---|
| |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동일종목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 - |
| |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br>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br>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br>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br>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동일법인 등이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 | - |

| | | |
|---|---|---|
| 발행한 지분증권 투자 | 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 파생상품매매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동일회사 기초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br>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br>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br>다.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br>라.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br>마.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 |
|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취득 |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 |

주1)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개요

-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합니다.

2) 주요투자전략

- 한국거래소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소형주에 해당하는 종목에 주로 투자합니다. 업종이나 테마에 베팅하지 않고 **Bottom-up***리서치를 바탕으로 투자합니다.

- 높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 확고한 시장지배력과 진입장벽, 글로벌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로 보유할 경우 기업가치의 증가가 예상되는 강소중견기업에 주로 투자합니다.
- KRX 한국거래소 시가총액 기준 **중소형주***에 최소 70%이상(편입주식 기준)을 투자하여 장기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철저한 펀더멘탈 리서치를 통해 수립한 종목별 투자전략을 바탕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① 지속 가능한 사업구조와 우수한 경영진을 지닌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고 장기 투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비교지수*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 상향식 투자분석(Bottom up approach)*방식으로 선별하여 투자할 계획
✓ 기업방문을 통한 기업 분석
✓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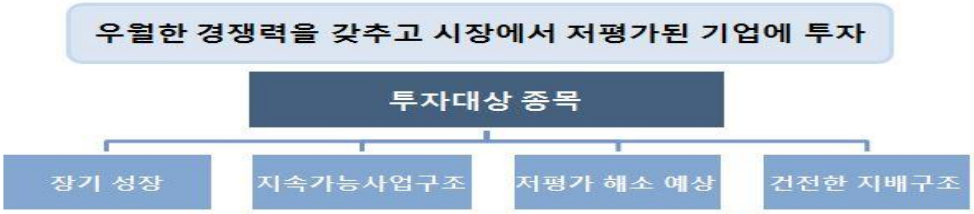


② 포트폴리오 구성의 원칙

✓ 장기(3년이상) 관점에서 우수한 경영진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지닌 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 이해할 수 있고 좋은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
✓ 소외된 저평가 기업에 대한 발굴 및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제고
✓ 건전한 지배구조와 우수한 경영진을 갖춘 기업에 투자
✓ 펀더멘탈 분석 : 투자운용 프로세스 중 중요한 요소인 펀더멘탈 분석이며, 이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수익창출 여부, 이슈 분석 및 가격의 재평가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이 단계에서는 회사의 아래 사항들이 포함하여 분석.

※ 특히 중소형주의 경우 아래 기본원칙을 토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ㄱ) 경영진이 정직하고 능력이 있는가?
(ㄴ) 비즈니스모델이 견고하여 진입장벽이 높은가?
(ㄷ) 확고한 시장지배력으로 시장을 선도하는가?
(ㄹ) 글로벌 경쟁력으로 시장을 확장해가는가?
(ㅁ) 미래의 성장전략을 착실히 개척해나가는가?
(ㅂ) 재무구조가 우수하고 현금창출 여력이 높은가?
(ㅅ) 중장기 보유하게 될 경우 기업가치가 증식될 것인가?

③ 포트폴리오 선정프로세스

*** Bottom up approach 방식(상향식 접근방식) : 기업분석→산업분석→거시경제순으로 분석하는 방식**

*** 중소형주 : 한국거래소 분류기준에 따라 대형주(시가총액 1~100위)가 아닌 종목과 KOSDAQ내 한국거래소 분류기준에 따라 KOSPI시가총액 상위 100위보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을 의미함.**

※ 상기의 프로세스 및 운용전략은 실제 운용 또는 시장상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비교지수 :**<br>**[KOSPI 대형주지수] x 30% + [KOSPI중형주지수 x (W*) + KOSPI소형주지수 x (1-W)] x 70%**<br>**주1) W = KOSPI중형주 시가총액 / (KOSPI중형주 시가총액 + KOSPI소형주 시가총액)**<br>※ 선정사유 :<br>펀드의 운용성과 측정을 객관적으로 평가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자산내 주식편입비율을 감안하여 지정하였습니다. |

* 상기 비교지수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전략은 일괄신고서 작성시점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제시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의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최적의 대안이 존재할 경우 별도의 사전예고 없이 변경 시행될 수도 있으며, 이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3) 위험관리

피드백(사전적리스크→리스크모니터링→사후적 리스크관리)을 통한 리스크에 대한 사전 통제력을 강화하여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시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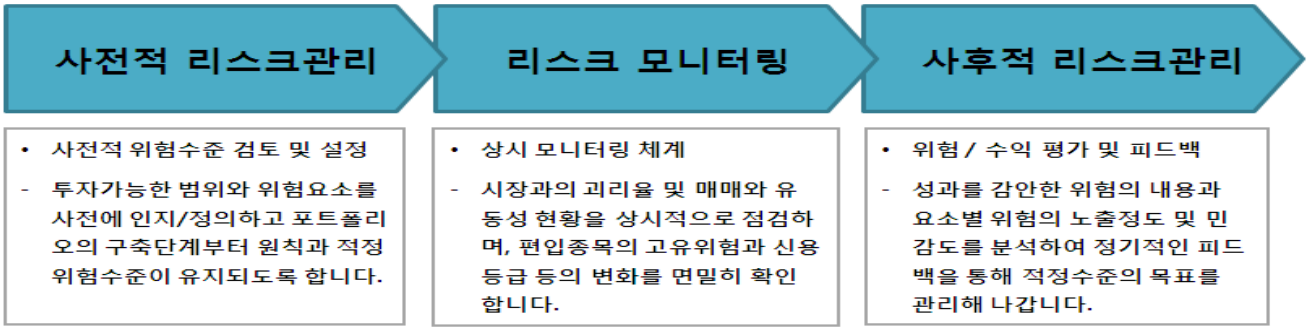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 일반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 |
|---|---|
| 시장위험 |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식가격 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주식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주식가격은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증권차입위험 | 이 투자신탁이 투자증권을 차입할 경우, 차입자산을 매도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증권대여위험 | 이 투자신탁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여할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레버리지 위험 | 이 투자신탁이 주식및채권관련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은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 이 투자신탁이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환매조건부 매도로 운용할 수 있으며, 환매조건부채권(RP)이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중소형주 집중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중소형주에 집중 투자하므로 대형주에 주로 투자하거나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고르게 분산투자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에 비해 변동성이 클 수 있고,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더 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 이 투자신탁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한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 기타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유동성에 따른 위험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

| | |
|---|---|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환매연기위험 |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br>환매연기사유는 '11.매입,환매,전환기준'의 '나.환매'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 증권대차 거래 위험 |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투자위험 등급 | (2)등급 | 높은 위험 |
|---|---|---|

**※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3년간 실제 주간 수익률의 변동성(연환산) : 17.71%**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80%이상 주식에 투자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 6개의 투자위험 등급 중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며, 투자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은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과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은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으로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매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 이란?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투자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을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수치로써,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를 의미합니다.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하며, 수익률 변동성 값이 클수록 투자신탁의 위험은 커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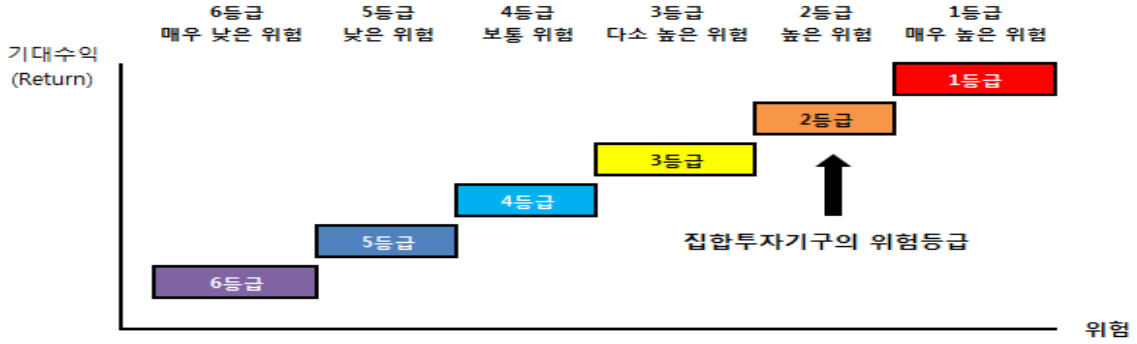


※ 투자위험등급분류 기준표(연환산 표준편차 기준)

| 등급 | 1(고위험) | 2 | 3 | 4 | 5 | 6(저위험) |
|---|---|---|---|---|---|---|
| **표준편차** | 25%초과 | **25%이하** | 15%이하 | 10%이하 | 5%이하 | 0.5%이하 |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분류하였음.

##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집합투자기구의 가입가능한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지급비율(%) | | | | | |
|---|---|---|---|---|---|---|
| 보수 구조 | 종류A | 종류Ae | 종류C1 | 종류C2 | 종류C3 | 종류C4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 수수료선취-온라인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 투자자의 자격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집합투자증권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 집합투자증권 | 가입제한이 없음 | 종류C1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1년이상 보유 | 종류C1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2년이상 보유 | 종류C1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3년이상 보유 |
| 선취판매 수수료 | 납입금액의 1.0%이내 | 납입금액의 0.5% 이내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후취판매 수수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구분 | 지급비율(%) | | | | |
|---|---|---|---|---|---|
| 보수 구조 | 종류Ce | 종류CI | 종류CF | 종류CW | 종류S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등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
| 투자자의 자격 |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 전용 집합투자증권 | 최초 납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투자자용 집합투자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전용 집합투자증권 | Wrap account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정금전신탁 전용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
| 선취판매 수수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후취판매 수수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구분 | 지급비율(%) | | | | |
|---|---|---|---|---|---|
| 보수 구조 | 종류C-P | 종류C-P2 | 종류S-P | 종류S-I | 종류AG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 투자자의 자격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이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서 최초 납입금액이 50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로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

| | | | | | |
|---|---|---|---|---|---|
| | 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 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 억원 이상인 고액투자자용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 경우 일반 창구 판매 수수료·보수 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증권 |
| 선취판매 수수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납입금액의 0.55%이내 |
| 후취판매 수수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구분 | 지급비율(%) | | | |
|---|---|---|---|---|
| 보수 구조 | 종류CG | 종류C-Pe | 종류C-Pe2 | 종류S-P2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
| 투자자의 자격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 판매 수수료·보수 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증권 |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으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 |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
| 선취판매 수수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후취판매 수수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주1)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오후 3시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단,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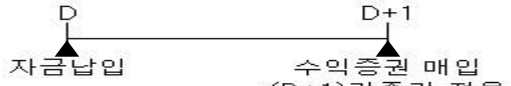


**(오후 3시30분 이전)**

(나)**오후 3시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단,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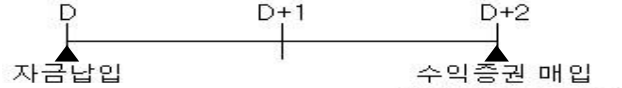


**(오후 3시30분 경과 후)**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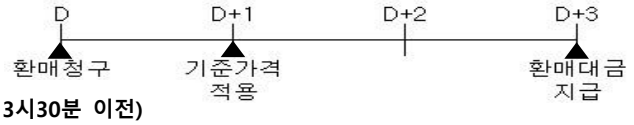


**(오후 3시30분 이전)**

(나)**오후 3시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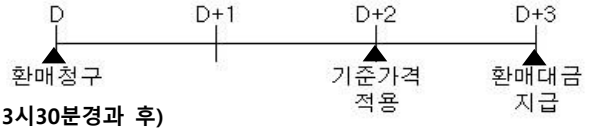


**(오후 3시30분경과 후)**

(3)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시 취소 또는 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시30분[오후 3시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30분[오후 3시30분] 경과 후 매입청구 또는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4)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 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5)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투자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환매를 연기한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법 시행령 제257조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또는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수익증권에 한합니다.
1. 종류C1(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종류C1(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수익증권을 종류C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수익증권으로 전환
2. 종류C1(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이 되는 경우 종류C2 수익증권을 종류C3(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수익증권으로 전환
3. 종류C1(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종류C3(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수익증권을 종류C4(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수익증권으로 전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 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매입 또는 환매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수일 또는 환매대금 지급일 등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할 수 있습니다.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 구분 | 내용 |
|---|---|
| 기준가격 산정방법 |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 |
|---|---|
|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 펀드 간 판매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 기준가격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
| 기준가격 공시시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
|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cgiam.com) ·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주1)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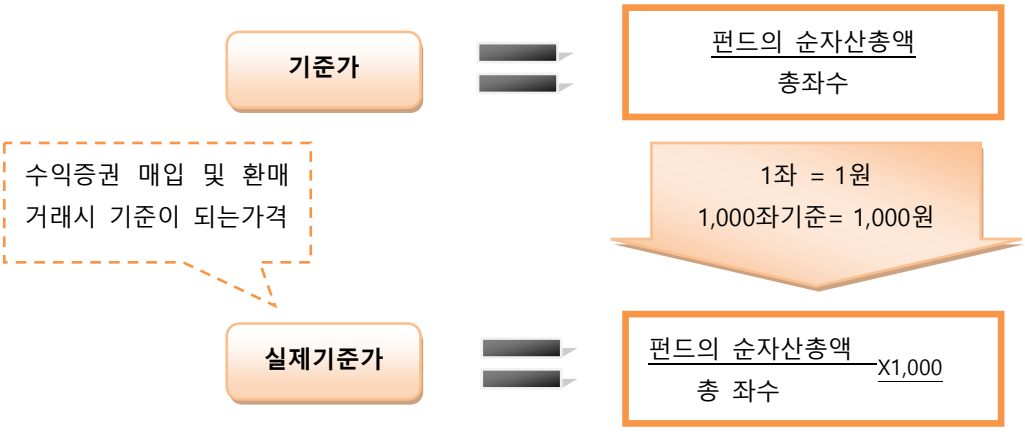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대상자산 | 평가방법 |
|---|---|
| ①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②비상장주식 |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③장내파생상품 |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으로 평가 |
| ③-①장외파생상품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
| ④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에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⑤비상장채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 |
|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 ⑦집합투자기구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

| | |
|---|---|
| | 상장된 집합투자기구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명칭 (종류) | | 가입자격 | 수수료율 | | | |
|---|---|---|---|---|---|---|
| | | | 선취판매 수수료 | 후취판매 수수료 | 환매 수수료 | 전환 수수료 |
| A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집합투자증권 | **납입금액의 1.0%이내** | - | - | - |
| Ae | 수수료선취-온라인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 집합투자증권 | **납입금액의 0.5%이내** | - | - | |
| C1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가입제한이 없음 | - | - | - | - |
| C2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종류C1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1년 이상 보유 | - | - | - | - |
| C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종류C1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2년 이상 보유 | - | - | - | - |
| C4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종류C1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3년 이상 보유 | - | - | - | - |
| C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 집합투자증권 | - | - | - | - |
| CI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 최초 납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투자자용 집합투자증권 | - | - | - | - |
| CF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전용 집합투자증권 | - | - | - | - |
| CW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 Wrap account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정금전신탁 전용 집합투자증권 | - | - | - | - |
| S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 -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 - |
| C-P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 - | - | - | |
| C-P2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이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 - | - | - | - |
| S-P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 - | - | - | - |

| | | | | | | |
|---|---|---|---|---|---|---|
| S-I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서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고액투자자용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 - | - | - | - |
| AG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로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 판매 수수료·보수 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증권 | 납입금액의 0.55%이내 | - | - | |
| CG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 판매 수수료·보수 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증권 | - | - | - | - |
| C-P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으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 | - | - | - | - |
| C-Pe2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 | - | - | - | - |
| S-P2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 - | - | - | - |
| 부과기준 | | | 매입시 | 환매시 | 환매시 | 전환시 |

주1)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구분 | 지급비율(연간, %) | | | | | | 지급시기 |
|---|---|---|---|---|---|---|---|
| | A | Ae | C1 | C2 | C3 | C4 |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 수수료선취-온라인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
| 집합투자업자보수 | 0.7500 | 0.7500 | 0.7500 | 0.7500 | 0.7500 | 0.7500 | 매 3 개월후급 |
| 판매회사보수 | 0.6000 | 0.3000 | 1.3000 | 1.1500 | 0.8000 | 0.7000 | |
| 신탁회사보수 | 0.0250 | 0.0250 | 0.0250 | 0.0250 | 0.0250 | 0.0250 | |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0.0150 | 0.0150 | 0.0150 | 0.0150 | 0.0150 | 0.0150 | |
| **총 보수** | **1.3900** | **1.0900** | **2.0900** | **1.9400** | **1.5900** | **1.4900** | |
| 기타비용 | 0.0047 | 0.0047 | - | 0.0047 | 0.0047 | 0.0047 | 사유 |

| | | | | | | | 발생시 |
|---|---|---|---|---|---|---|---|
| **총보수· 비용** | 1.3947 | 1.0947 | **2.0900** | 1.9447 | 1.5947 | 1.4947 | |
| (동종유형 총 보수) | 1.360 | 1.010 | 1.5800 | - | - | - | |
| **총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 1.3947 | 1.0947 | **2.0900** | 1.9447 | 1.5947 | 1.4947 | |
| 증권거래비용 | 0.0542 | 0.0545 | 0 | 0.0627 | 0.0550 | 0.0555 | 사유 발생시 |

| 구분 | 지급비율(연간, %) | | | | | 지급시기 |
|---|---|---|---|---|---|---|
| | Ce | CI | CF | CW | S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등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 |
| 집합투자업자보수 | 0.7500 | 0.7500 | 0.7500 | 0.7500 | 0.7500 | 매 3 개월후급 |
| 판매회사보수 | 0.5000 | 0.0500 | 0.0300 | 0.0000 | 0.2300 | |
| 신탁회사보수 | 0.0250 | 0.0250 | 0.0250 | 0.0250 | 0.0250 | |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0.0150 | 0.0150 | 0.0150 | 0.0150 | 0.0150 | |
| **총 보수** | 1.2900 | 0.8400 | 0.8200 | 0.7900 | 1.0200 | |
| 기타비용 | 0.0047 | 0.0047 | 0.0048 | 0.0047 | 0.0047 | 사유 발생시 |
| **총보수· 비용** | 1.2947 | 0.8447 | 0.8248 | 0.7947 | 1.0247 | |
| (동종유형 총 보수) | 1.190 | - | - | - | - | |
| **총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 1.2947 | 0.8447 | 0.8248 | 0.7947 | 1.0247 | |
| 증권거래비용 | 0.0574 | 0.0578 | 0.1177 | 0.0519 | 0.0547 | 사유 발생시 |

| 구분 | 지급비율(연간, %) | | | | | 지급시기 |
|---|---|---|---|---|---|---|
| | C-P | C-P2 | S-P | S-I | AG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
| 집합투자업자보수 | 0.7500 | 0.7500 | 0.7500 | 0.75 | 0.75 | 매 3 개월 후급 |
| 판매회사보수 | 0.7000 | 0.6000 | 0.1700 | 0.02 | 0.35 | |
| 신탁회사보수 | 0.0250 | 0.0250 | 0.0250 | 0.025 | 0.025 | |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0.0150 | 0.0150 | 0.0150 | 0.015 | 0.015 | |
| **총 보수** | 1.4900 | 1.3900 | 0.9600 | **0.81** | **1.14** | |
| 기타비용 | 0.0047 | 0.0047 | 0.0047 | - | - | 사유 발생시 |
| **총보수· 비용** | 1.4947 | 1.3947 | 0.9647 | **0.810** | **1.140** | |
| (동종유형 총 보수) | - | - | - | **-** | **-** | |
| **총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 1.4947 | 1.3947 | 0.9647 | 0.810 | 1.140 | |

| | | | | | | |
|---|---|---|---|---|---|---|
| 증권거래비용 | 0.0566 | 0.0561 | 0.0563 | - | - | 사유 발생시 |

| 구분 | 지급비율(연간, %) | | | | 지급시기 |
|---|---|---|---|---|---|
| | CG | C-Pe | C-Pe2 | S-P2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 |
| 집합투자업자보수 | 0.75 | 0.7500 | 0.7500 | 0.7500 | 매 3 개월 후급 |
| 판매회사보수 | 0.55 | 0.3400 | 0.3000 | 0.1600 | |
| 신탁회사보수 | 0.025 | 0.0250 | 0.0250 | 0.0250 | |
|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0.015 | 0.0150 | 0.0150 | 0.0150 | |
| **총 보수** | **1.34** | 1.1300 | 1.0900 | 0.9500 | |
| 기타비용 | - | 0.0047 | 0.0047 | 0.0047 | 사유 발생시 |
| **총보수· 비용** | **1.340** | 1.1347 | 1.0947 | 0.9547 | |
| (동종유형 총 보수) | **-** | - | - | - | |
| **총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 1.340 | 1.1347 | 1.0947 | 0.9547 | |
| 증권거래비용 | - | 0.0584 | 0.0573 | 0.0589 | 사유 발생시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2.06.01 ~ 2023.05.31 ]

※ 기타비용 :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분담금, 보관대리인보수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 (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2023.6.30기준)

주6)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2.06.01 ~ 2023.05.31 ]

※ 증권거래비용 :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SWAP매매수수료, 대차관련수수료, REPO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매매수수료, 해외파생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
|---|---|
| 증권거래비용 | 60,616 |

※ 금융비용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

| 구분 |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
|---|---|
| 금융비용 | - |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 명칭(종류) |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 A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 242 | 388 | 540 | 860 | 1,766 |
| Ae | 수수료선취-온라인 | 162 | 278 | 398 | 653 | 1,383 |
| C1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215 | 436 | 663 | 1,137 | 2,445 |
| C2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199 | 405 | 616 | 1,058 | 2,286 |
| C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163 | 332 | 507 | 874 | 1,906 |
| C4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153 | 312 | 476 | 821 | 1,795 |
| C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133 | 270 | 413 | 714 | 1,569 |
| CI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 87 | 177 | 271 | 470 | 1,046 |
| CF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등 | 85 | 173 | 264 | 459 | 1,022 |
| CW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 81 | 166 | 255 | 443 | 986 |
| S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 105 | 214 | 328 | 568 | 1,258 |
| C-P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153 | 312 | 476 | 821 | 1,795 |
| C-P2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143 | 291 | 444 | 768 | 1,683 |
| S-P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 99 | 202 | 309 | 536 | 1,188 |
| S-I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 | 83 | 170 | 260 | 451 | 1,005 |
| AG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171 | 291 | 416 | 680 | 1,433 |
| CG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137 | 280 | 427 | 738 | 1,621 |
| C-P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116 | 237 | 362 | 628 | 1,386 |
| C-Pe2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112 | 229 | 350 | 606 | 1,340 |
| S-P2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 98 | 200 | 306 | 530 | 1,176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으며 미설정된 종류C1(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보수체감형)의 경우 비교대상 종류의 기타비용등을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라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 단순히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종류 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수익증권의 경우 보유기간을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산정하였으며, 후취판매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기타비용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6년 6월 16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한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집합투자기구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C-P(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종류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및 C-Pe(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수익증권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 납입요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금액 한도 |
| 수령요건 |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br>(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
| 세액공제 | - 연간 저축금액 중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br>-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새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1일이후 납입액부터 적용)<br>·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계좌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추가 세액공제 |
| 연금수령시 과세 |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
| 분리과세한도 |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제외)<br>연금소득이 1천2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1일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
| 연금외수령시 과세 |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br>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
| 해지가산세 | 없음 |
|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 천재지변<br>가입자의 사망<br>가입자의 해외이주 |

| | |
|---|---|
|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br>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br>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시 과세 |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
| 연금계좌 승계 |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종류 C-P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e2(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및 S-P2(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수익증권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5%(지방소득세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2)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시 연금수령 방법 등에 따라 과세

**3) 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 연금 수령, 연금외 수령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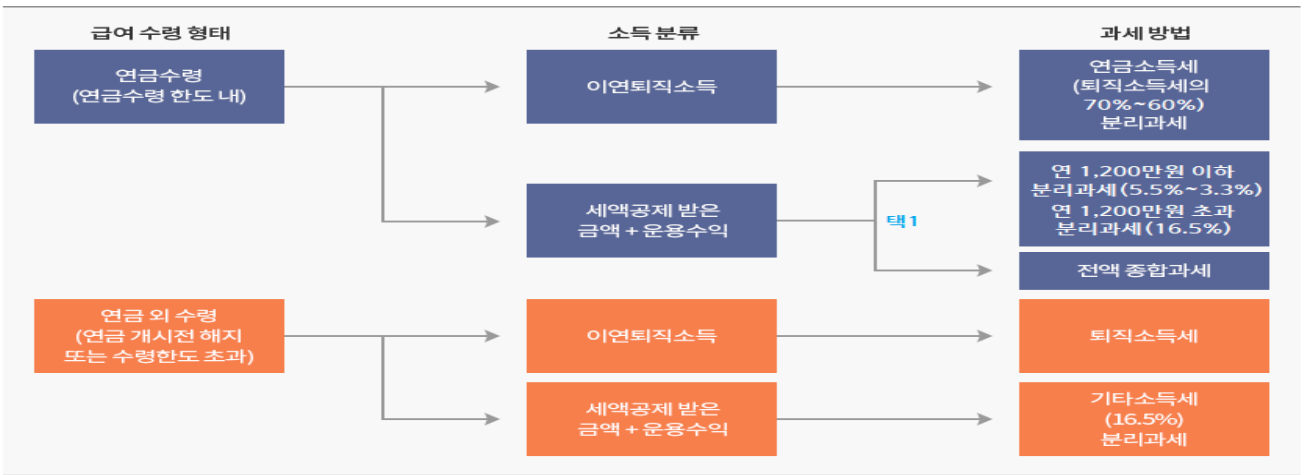

주1)2015년 이후 수령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세율임
주2)연금수령 한도산식, 연금소득세 세율은 연금저축과 동일
<자료출처>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

**※ 퇴직연금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준가는 일반기준가와 과표기준가가 있으며, 이들 가격은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cgiam.com)·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일반기준가란,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과 채권 등의 모든 자산을 그날의 시가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채권의 이자와 주식의 배당금 등의 수입을 추가하여 자산총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에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차감하여 순자산총액을 산출하고, 그 날의 수익증권(또는 주권)의 총좌수로 나누어 기준가격이 산출됩니다.
과표기준가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수익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등은 과세대상 수익이므로 이를 기초로 과표산정을 위해 산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즉 거래는 기준가격으로 하고 과세는 과표기준가격으로 합니다.
(7) 투자자에 대한 과세 사례(예시)

(단위:원)

| 거래일자 | 기준가격 | 과표기준가격 | 거래구분 | 좌수 | 입출금금액 |
|---|---|---|---|---|---|
| 연초 | 1,000 | 1,000 | 입금 | 10,000,000좌 | 10,000,000 |
| 연말 | 1,300 | 1,200 | 출금 | 10,000,000좌 | 13,000,000 |

투자신탁재산이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투자이익의 구성이 아래와 같은 경우, 그 그 속자가 법인 또는 개인(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를 가정)인 경우 각가의 펀드소득·원천징수세액·결정세액·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원)

| 구분 | 이자·배당 | 매매·평가이익 |
|---|---|---|
| 채권 | 1,000,000 | Δ1,000,000 |
| 주식 | 2,000,000 | 1,000,000 |

① 투자이익과 투자신탁이익은 각각 3,000,000원과 2,000,000원입니다.
②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대상소득=투자신탁이익(개인·법인동일)→ 2,000,000원
- 원천징수세액 = 2,000,000*15.4% =308,000

③ 결정세액(납세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액) 및 납부세액의 계산 : 개인과 법인의 경우

(단위:원)

| 구분 | 개인 | 법인 |
|---|---|---|
| 결정세액 | 투자신탁이익 x 누진세율(T)<br>=2,000,000 x T | 투자이익 x 법인세율(t)<br>=3,000,000 x t |
| 납부세액 | 결정세액-원천징수세액<br>=2,000,000 x T – 308,000 | 결정세액-원천징수세액<br>=3,000,000 x t – 308,000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상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상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 간 | 회계감사법인 | 감사의견 |
|---|---|---|
| 제 8 기( 2022.06.01 - 2023.05.31 ) | 삼덕회계법인 | 적정 |
| 제 7기( 2021.06.01 - 2022.05.31 ) | 삼덕회계법인 | 적정 |
| 제 6기( 2020.06.01 - 2021.05.31 ) | 삼덕회계법인 | 적정 |

### 가. 요약재무정보

KCGI코리아스몰캡증권[주식]

[단위:원]

| 재무상태표 | | | |
|---|---|---|---|
| 항 목 | 제 8 기 | 제 7기 | 제 6기 |
| | ( 2023.05.31 ) | ( 2022.05.31 ) | ( 2021.05.31 ) |
| 운용자산 | 113,549,659,242 | 122,234,247,709 | 131,877,296,365 |
| 증권 | 113,128,209,440 | 121,402,383,000 | 131,542,900,660 |
| 파생상품 | 0 | 0 | 0 |
| 부동산/실물자산 | 0 | 0 | 0 |
| 현금 및 예치금 | 421,449,802 | 831,864,709 | 334,395,705 |
| 기타 운용자산 | 0 | 0 | 0 |
| 기타자산 | 1,181,131,473 | 55,571,568 | 451,847,935 |
| 자산총계 | 114,730,790,715 | 122,289,819,277 | 132,329,144,300 |
| 운용부채 | 0 | 0 | 0 |
| 기타부채 | 4,118,130,678 | 857,490,167 | 1,286,321,679 |
| 부채총계 | 4,118,130,678 | 857,490,167 | 1,286,321,679 |
| 원본 | 85,768,386,723 | 88,228,870,807 | 90,471,345,832 |
| 수익조정금 | -764,261,124 | -1,996,788,114 | -9,943,423,605 |
| 이익잉여금 | 25,608,534,438 | 35,200,246,417 | 50,514,900,394 |
| 자본총계 | 110,612,660,037 | 121,432,329,110 | 131,042,822,621 |

[단위 : 원, %]

| 손익계산서 | | | |
|---|---|---|---|
| 항 목 | 제 8 기 | 제 7기 | 제 6기 |
| | ( 2022.06.01 - 2023.05.31 ) | ( 2021.06.01 - 2022.05.31 ) | ( 2020.06.01 - 2021.05.31 ) |
| 운용수익 | -8,143,707,112 | -6,014,411,537 | 58,462,426,858 |
| 이자수익 | 97,970,726 | 34,314,714 | 11,278,398 |
| 배당수익 | 1,669,993,514 | 1,358,371,270 | 1,106,614,601 |
| 매매/평가차익(손) | -9,911,671,352 | -7,407,097,521 | 57,344,533,859 |
| 기타수익 | 137,555 | 101,157 | 0 |
| 운용비용 | 1,272,886,825 | 1,602,633,641 | 1,611,259,748 |

| | | | |
|---|---|---|---|
| 관련회사 보수 | 1,272,886,825 | 1,602,633,641 | 1,611,259,748 |
| 매매수수료 | 0 | 0 | 0 |
| 기타비용 | 21,647,397 | 25,570,820 | 24,785,174 |
| 당기순이익 | -9,438,103,779 | -7,642,514,841 | 56,826,381,936 |
| 매매회전율 | 32.43 | 14.58 | 67.19 |

주1)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위 재무상태표는 운용 펀드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재무상태표의 부채 및 자본항목과 손익계산서의 비용항목은 각 개별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항목 값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3)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2022.06.01 - 2023.05.31 ) | | | 전기( 2021.06.01 - 2022.05.31 ) | | |
|---|---|---|---|---|---|---|
| | 거래 | 거래비용 | | 거래 | 거래비용 | |
| | 금액(A) | 금액(B) | 거래비용비율(B/A) | 금액(A) | 금액(B) | 거래비용비율(B/A) |
| 주식 | 59,406 | 59.4760 | 0.1001 | 38,079 | 38 | 0.1001 |
|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 - | - | - | - | - | - |
| 부동산 | - | - | - | - | - | - |
| 장내파생상품 | - | - | - | - | - | - |
| 장외파생상품 | - | - | - | - | - | - |
| 기타(REPO,대차,콜 등) | 679,018 | 1.1402 | 0.0002 | 826,626 | 1 | 0.0002 |
| 합계 | 738,424 | 60.6162 | 0.0082 | 864,705 | 39 | 0.0046 |

주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이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주, 백만원, %)

| 주식 매수 | | 주식 매도 | |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 매매회전율(A/B) |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A) | | | |
| 439,408 | 26,949 | 644,758 | 32,528 | 100,306 | 32.43 | 31.94 |

나. 재무상태표

[단위: 원]

| 과 목 | 제8기( 2023.05.31 ) | | 제7기( 2022.05.31 ) | | 제6기( 2021.05.31 ) | |
|---|---|---|---|---|---|---|
| | 금 | 액 | 금 | 액 | 금 | 액 |
| 자 산 | | | | | | |
| 운 용 자 산 | | | | | | |
| 현금및예치금 | | 421,449,802 | | 831,864,709 | | 334,395,705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421,449,802 | | 831,864,709 | | 334,395,705 | |
| 2. 예치금 | | | | | | |
| 3. 증거금 | | | | | | |
| 대출채권 | | 10,000,000,000 | | 3,000,000,000 | | 3,000,000,000 |
| 1. 콜론 | | | | | | |
|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0,000,000,000 | | 3,000,000,000 | | 3,000,000,000 | |
| 3. 매입어음 | | | | | | |
| 4. 대출금 | | | | | | |
| 유가증권 | | 103,128,209,440 | | 118,402,383,000 | | 128,542,900,660 |
| 1. 지분증권 | 103,128,209,440 | | 118,402,383,000 | | 128,542,900,660 | |
| 2. 채무증권 | | | | | | |
| 3. 수익증권 | | | | | | |
| 4. 기타유가증권 | | | | | | |
| 파생상품 | | | | | | |
| 1. 파생상품 | | | | | | |

| 과 목 | 제8기( 2023.05.31 ) | | 제7기( 2022.05.31 ) | | 제6기( 2021.05.31 ) | |
|---|---|---|---|---|---|---|
| | 금 | 액 | 금 | 액 | 금 | 액 |
| **자 산** | | | | | | |
| **부동산과 실물자산** | | | | | | |
| 1. 건물 | | | | | | |
| 2. 토지 | | | | | | |
| 3. 농산물 | | | | | | |
| 4. 축산물 | | | | | | |
| **기타운용자산** | | | | | | |
| 1. 임차권 | | | | | | |
| 2. 전세권 | | | | | | |
| **기 타 자 산** | | 1,181,131,473 | | 55,571,568 | | 451,847,935 |
|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 984,430,784 | | 15,153 | | | |
| 2. 정산미수금 | | | | | | |
| 3. 미수이자 | 2,420,951 | | 813,670 | | 165,330 | |
| 4. 미수배당금 | | | | | | |
| 5. 기타미수입금 | 194,279,738 | | 54,742,745 | | 451,682,605 | |
| 6. 기타자산 | | | | | | |
| 7.수익증권청약금 | | | | | | |
| **자 산 총 계** | | 114,730,790,715 | | 122,289,819,277 | | 132,329,144,300 |
| **부 채** | | | | | | |
| **운 용 부 채** | | | | | | |
| 1. 옵션매도 | | | | | | |
|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 | | | |
| **기 타 부 채** | | 4,118,130,678 | | 857,490,167 | | 1,286,321,679 |
|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 3,250,129,812 | | | | | |
| 2. 정산미지급금 | | | | | | |
| 3. 해지미지급금 | 387,997,813 | | 109,342,176 | | 902,145,603 | |
| 4. 수수료미지급금 | 326,907,253 | | 376,634,891 | | 384,176,076 | |
| 5. 기타미지급금 | 153,095,800 | | 371,513,100 | | | |
| 6. 기타부채 | | | | | | |
| **부 채 총 계** | | 4,118,130,678 | | 857,490,167 | | 1,286,321,679 |
| **자 본** | | | | | | |
| 1. 원 본 | 85,768,386,723 | | 88,228,870,807 | | 90,471,345,832 | |
|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 | | | | | |
| 3. 이월잉여금 | 24,844,273,314 | | 33,203,458,303 | | 40,571,476,789 | |
| (발행좌수 당기: 85,768,386,723 좌 | 이익잉여금 | 25,608,534,438 | | 35,200,246,417 | | 50,514,900,394 |
| 전기: 88,228,870,807 좌 | 수익조정금 | -764,261,124 | | -1,996,788,114 | | -9,943,423,605 |
| 전전기: 90,471,345,832 좌) | | | | | | |
| (기준가격 당기: 1,257.03 원 | | | | | | |
| 전기: 1,366.65 원 | | | | | | |
| 전전기: 1,450.17 원) | | | | | | |
| **자 본 총 계** | | 110,612,660,037 | | 121,432,329,110 | | 131,042,822,621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 114,730,790,715 | | 122,289,819,277 | | 132,329,144,300 |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 과 목 | 제8기( 2022.06.01-2023.05.31 ) | | 제7기( 2021.06.01-2022.05.31 ) | | 제6기( 2020.06.01-2021.05.31 ) | |
|---|---|---|---|---|---|---|
| | 금 | 액 | 금 | 액 | 금 | 액 |
| **운 용 수 익** | | | | | | |
| **1. 투자수익** | | 1,767,964,240 | | 1,392,685,984 | | 1,117,892,999 |
| 1. 이 자 수 익 | 97,970,726 | | 34,314,714 | | 11,278,398 | |
| 2. 배당금수익 | 1,669,993,514 | | 1,358,371,270 | | 1,106,614,601 | |
| 3. 수수료수익 | | | | | | |
| 4. 임대료수익 | | | | | | |
|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 | 9,754,755,753 | | 11,362,979,027 | | 60,545,115,808 |
| 1. 지분증권매매차익 | 9,754,448,139 | | 11,362,877,870 | | 29,579,540,685 | |
|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 | | | | | |
|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 | | | | | |
| 4. 지분증권평가차익 | | | | | 30,965,050,188 | |
| 5. 외환거래/평가차익 | | | | | | |
|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 | | | | | |
| 7. 기타거래차익 | 307,614 | | 101,157 | | 524,935 | |
|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 | 19,666,289,550 | | 18,769,975,391 | | 3,200,581,949 |
| 1. 지분증권매매차손 | 3,274,643,136 | | 1,561,611,674 | | 3,200,581,503 | |
|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 | | | | | |
|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 | | | | | |
| 4. 지분증권평가차손 | 16,391,646,132 | | 17,208,362,259 | | | |
| 5. 외환거래/평가차손 | | | | | | |
| 6. 대손상각비 | | | | | | |
|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 282 | | 1,458 | | 446 | |
| 8. 기타거래손실 | | | | | | |
| **운 용 비 용** | | 1,294,534,222 | | 1,628,204,461 | | 1,636,044,922 |
| 1. 운용수수료 | 779,863,510 | | 965,382,863 | | 929,812,968 | |
| 2. 판매수수료 | 467,029,779 | | 605,073,376 | | 650,455,032 | |
| 3. 수탁수수료 | 25,993,536 | | 32,177,402 | | 30,991,748 | |
| 4. 투자자문수수료 | | | | | | |
| 5. 임대자산관련비용 | | | | | | |
| 6. 기타비용 | 21,647,397 | | 25,570,820 | | 24,785,174 | |
|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 | -9,438,103,779 | | -7,642,514,841 | | 56,826,381,936 |
|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 | -0.110041755 | | -0.086621474 | | 0.628114697 |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KCGI 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주식] [단위: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2.06.01 - 2023.05.31 | 881 | 1,204 | 180 | 217 | 193 | 230 | 869 | 1,109 |
| 2021.06.01 - 2022.05.31 | 875 | 1,268 | 333 | 490 | 326 | 480 | 881 | 1,218 |
| 2020.06.01 - 2021.05.31 | 1,424 | 1,341 | 375 | 472 | 925 | 1,083 | 875 | 1,314 |

주1) 2022.06.01 - 2023.05.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73,094,362좌/217,584,506원

주2) 2021.06.01 - 2022.05.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83,975,155좌/114,764,660원

주3) 2020.06.01 - 2021.05.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8,412,724좌/70,206,539원

KCGI 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 A(수수료선취-오프라인) [단위: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2.06.01 - 2023.05.31 | 222 | 289 | 10 | 11 | 47 | 53 | 185 | 222 |
| 2021.06.01 - 2022.05.31 | 251 | 349 | 51 | 73 | 80 | 113 | 222 | 290 |
| 2020.06.01 - 2021.05.31 | 566 | 498 | 38 | 44 | 353 | 388 | 251 | 349 |

주1) 2021.06.01 - 2022.05.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7,221,257좌/74,381,746원

KCGI 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 Ae(수수료선취-온라인) [단위: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2.06.01 - 2023.05.31 | 151 | 201 | 27 | 30 | 45 | 51 | 133 | 164 |
| 2021.06.01 - 2022.05.31 | 131 | 185 | 91 | 129 | 71 | 100 | 151 | 201 |
| 2020.06.01 - 2021.05.31 | 124 | 111 | 118 | 141 | 110 | 124 | 131 | 185 |

주1) 2022.06.01 - 2023.05.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6,080,356좌/7,461,620원

주2) 2020.06.01 - 2021.05.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5,923,631좌/36,510,653원

KCGI 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 C1(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단위: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2.06.01 - 2023.05.31 | 0.60 | 0.74 | 0.15 | 0.16 | 0.75 | 0.78 | 0 | 0 |
| 2021.06.01 - 2022.05.31 | 1.22 | 1.62 | 3.01 | 4.12 | 3.63 | 5.01 | 0.60 | 0.74 |
| 2020.06.01 - 2021.05.31 | 1.72 | 1.46 | 1.64 | 1.95 | 2.14 | 2.48 | 1.22 | 1.63 |

주 1) 2020.06.01 - 2021.05.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629,553 좌/832,817 원

KCGI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단위: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 | (출자지분수) | | (출자지분수) | | (출자지분수) | | (출자지분수) | |
|---|---|---|---|---|---|---|---|---|
| 2022.06.01 - 2023.05.31 | 0.64 | 0.87 | 1.09 | 1.25 | 0.73 | 0.86 | 0.99 | 1.24 |
| 2021.06.01 - 2022.05.31 | 0.42 | 0.61 | 0.86 | 1.24 | 0.64 | 0.86 | 0.64 | 0.87 |
| 2020.06.01 - 2021.05.31 | 0.44 | 0.41 | 0.50 | 0.66 | 0.53 | 0.55 | 0.42 | 0.61 |

KCGI 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 C3(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단위: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2.06.01 - 2023.05.31 | 0.48 | 0.75 | 0.78 | 1.04 | 0.54 | 0.73 | 0.73 | 1.04 |
| 2021.06.01 - 2022.05.31 | 0.09 | 0.15 | 0.51 | 0.79 | 0.12 | 0.20 | 0.48 | 0.75 |
| 2020.06.01 - 2021.05.31 | 7.55 | 7.98 | 0.95 | 1.13 | 8.41 | 10.37 | 0.09 | 0.15 |

KCGI 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 C4(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단위: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2.06.01 - 2023.05.31 | 44 | 62 | 2 | 2 | 7 | 9 | 39 | 50 |
| 2021.06.01 - 2022.05.31 | 66 | 99 | 2 | 2 | 24 | 35 | 44 | 62 |
| 2020.06.01 - 2021.05.31 | 163 | 155 | 8 | 9 | 106 | 123 | 66 | 99 |

KCGI 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 Ce(수수료미징구-온라인) [단위: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2.06.01 - 2023.05.31 | 31 | 40 | 3 | 4 | 4 | 5 | 30 | 36 |
| 2021.06.01 - 2022.05.31 | 32 | 44 | 15 | 21 | 15 | 22 | 31 | 40 |
| 2020.06.01 - 2021.05.31 | 58 | 51 | 23 | 29 | 49 | 54 | 32 | 44 |

주 1) 2020.06.01 - 2021.05.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9,041,977 좌/12,575,579 원

KCGI 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 CI(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단위: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2.06.01 - 2023.05.31 | 32 | 43 | 0 | 0 | 0 | 0 | 33 | 40 |
| 2021.06.01 - 2022.05.31 | 32 | 46 | 13 | 20 | 13 | 20 | 32 | 44 |
| 2020.06.01 - 2021.05.31 | 59 | 54 | 0 | 0 | 27 | 29 | 32 | 46 |

주 1) 2022.06.01 - 2023.05.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6,705,488 좌/32,933,414 원

주 2) 2021.06.01 - 2022.05.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4,798,867 좌/19,849,222 원

주 3) 2020.06.01 - 2021.05.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7,688,764 좌/10,961,435 원

KCGI 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 CF(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등) [단위: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 | | | | | | | |
|---|---|---|---|---|---|---|---|---|
| 2022.06.01 - 2023.05.31 | 13 | 22 | 49 | 71 | 0 | 0 | 62 | 94 |
| 2021.06.01 - 2022.05.31 | 9 | 16 | 4 | 8 | 0 | 0 | 13 | 22 |
| 2020.06.01 - 2021.05.31 | 4 | 4 | 5 | 7 | 0 | 0 | 9 | 16 |

주1) 2022.06.01 - 2023.05.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1,921,538좌/77,674,840원

주2) 2021.06.01 - 2022.05.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1,236,047좌/18,281,392원

KCGI 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 CW(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단위: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2.06.01 - 2023.05.31 | 2.6 | 3.5 | 0.1 | 0.1 | 1.4 | 1.6 | 1.2 | 1.5 |
| 2021.06.01 - 2022.05.31 | 4.1 | 5.8 | 0.8 | 1.1 | 2.2 | 3.4 | 2.6 | 3.5 |
| 2020.06.01 - 2021.05.31 | 24.2 | 22.0 | 3.8 | 3.9 | 24.0 | 25.9 | 4.1 | 5.8 |

주1) 2022.06.01 - 2023.05.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30,923좌/666,220원

주2) 2021.06.01 - 2022.05.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69,276좌/502,194원

KCGI 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 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단위: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2.06.01 - 2023.05.31 | 23 | 30 | 2 | 2 | 6 | 7 | 19 | 24 |
| 2021.06.01 - 2022.05.31 | 25 | 35 | 8 | 11 | 9 | 14 | 23 | 30 |
| 2020.06.01 - 2021.05.31 | 48 | 43 | 9 | 12 | 33 | 37 | 25 | 35 |

주 1) 2020.06.01 - 2021.05.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767,475 좌/6,741,415 원

KCGI 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 C-P(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단위: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2.06.01 - 2023.05.31 | 139 | 180 | 12 | 13 | 20 | 22 | 132 | 156 |
| 2021.06.01 - 2022.05.31 | 158 | 217 | 12 | 16 | 31 | 42 | 139 | 180 |
| 2020.06.01 - 2021.05.31 | 276 | 241 | 19 | 22 | 137 | 147 | 158 | 217 |

KCGI 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 C-P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단위: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2.06.01 - 2023.05.31 | 44 | 57 | 8 | 8 | 12 | 13 | 40 | 48 |
| 2021.06.01 - 2022.05.31 | 52 | 71 | 5 | 7 | 13 | 18 | 44 | 57 |
| 2020.06.01 - 2021.05.31 | 89 | 78 | 9 | 10 | 47 | 50 | 52 | 71 |

KCGI 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 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단위: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 | | | | | | | |
|---|---|---|---|---|---|---|---|---|
| 2022.06.01 - 2023.05.31 | 11 | 15 | 1 | 2 | 2 | 2 | 11 | 13 |
| 2021.06.01 - 2022.05.31 | 12 | 17 | 4 | 5 | 4 | 6 | 11 | 15 |
| 2020.06.01 - 2021.05.31 | 11 | 10 | 7 | 9 | 6 | 7 | 12 | 17 |

주1) 2022.06.01 - 2023.05.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6,174,946좌/7,601,039원

주2) 2020.06.01 - 2021.05.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824,473좌/2,584,640원

KCGI 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 C-Pe(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단위: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2.06.01 - 2023.05.31 | 124 | 199 | 29 | 40 | 23 | 33 | 129 | 192 |
| 2021.06.01 - 2022.05.31 | 91 | 155 | 57 | 98 | 24 | 41 | 124 | 199 |
| 2020.06.01 - 2021.05.31 | 28 | 30 | 83 | 118 | 20 | 28 | 91 | 155 |

주1) 2022.06.01 - 2023.05.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0,193,191좌/59,777,173원

KCGI 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 C-Pe2(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단위: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2.06.01 - 2023.05.31 | 36 | 58 | 11 | 14 | 12 | 16 | 35 | 52 |
| 2021.06.01 - 2022.05.31 | 35 | 59 | 24 | 41 | 22 | 38 | 36 | 58 |
| 2020.06.01 - 2021.05.31 | 28 | 30 | 37 | 54 | 30 | 40 | 35 | 59 |

주1) 2022.06.01 - 2023.05.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5,990,078좌/23,304,894원

KCGI 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 S-P2(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단위: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2.06.01 - 2023.05.31 | 6.90 | 11.52 | 1.48 | 2.12 | 0.94 | 1.35 | 7.44 | 11.50 |
| 2021.06.01 - 2022.05.31 | 5.57 | 9.86 | 3.43 | 6.19 | 2.10 | 3.79 | 6.90 | 11.54 |
| 2020.06.01 - 2021.05.31 | 0.01 | 0.01 | 6.51 | 9.57 | 0.95 | 1.47 | 5.57 | 9.86 |

주1) 2022.06.01 - 2023.05.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321,738좌/8,165,306원

주2) 2021.06.01 - 2022.05.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048,713좌/1,750,106원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기준)

[단위:%]

| 기간 | 최근 1 년 | 최근 2 년 | 최근 3 년 | 최근 5 년 | 설정일 이후 |
|---|---|---|---|---|---|
| | 22.07.22 | 21.07.22 | 20.07.22 | 18.07.22 | 15.06.01 |

| | ~ 23.07.21 | ~ 23.07.21 | ~ 23.07.21 | ~ 23.07.21 | ~ 23.07.21 |
|---|---|---|---|---|---|
| KCGI 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주식] | 13.37 | -5.77 | 10.83 | 8.93 | 4.29 |
| 비교지수 | 6.07 | -9.68 | 7.13 | 2.58 | 1.33 |
| 수익률변동성 | 16.09 | 17.66 | 17.83 | 19.35 | 19.45 |
| 종류A(수수료선취-오프라인) | 11.85 | -7.07 | 9.32 | 7.44 | 2.89 |
| 비교지수 | 6.07 | -9.68 | 7.13 | 2.58 | 1.33 |
| 수익률변동성 | 16.09 | 17.66 | 17.83 | 19.35 | 19.45 |
| 종류Ae(수수료선취-온라인) | 12.18 | -6.79 | 9.64 | 7.77 | 3.19 |
| 비교지수 | 6.07 | -9.68 | 7.13 | 2.58 | 1.33 |
| 수익률변동성 | 16.09 | 17.66 | 17.83 | 19.35 | 19.45 |
| 종류C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11.25 | -7.58 | 8.73 | 6.87 | 3.84 |
| 비교지수 | 6.07 | -9.68 | 7.13 | 2.58 | 2.21 |
| 수익률변동성 | 16.09 | 17.66 | 17.83 | 19.35 | 18.38 |
| 종류C3(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11.64 | -7.25 | 9.12 | 7.26 | 6.88 |
| 비교지수 | 6.07 | -9.68 | 7.13 | 2.58 | 1.31 |
| 수익률변동성 | 16.09 | 17.66 | 17.83 | 19.35 | 18.75 |
| 종류C4(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11.74 | -7.17 | 9.21 | 7.34 | 6.08 |
| 비교지수 | 6.07 | -9.68 | 7.13 | 2.58 | 0.55 |
| 수익률변동성 | 16.09 | 17.66 | 17.83 | 19.35 | 19.22 |
| 종류Ce(수수료미징구-온라인) | 11.96 | -6.98 | 9.43 | 7.55 | 2.99 |
| 비교지수 | 6.07 | -9.68 | 7.13 | 2.58 | 1.33 |
| 수익률변동성 | 16.09 | 17.66 | 17.83 | 19.35 | 19.45 |
| 종류CI(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 12.45 | -6.56 | 9.92 | 8.03 | 3.42 |
| 비교지수 | 6.07 | -9.68 | 7.13 | 2.58 | 1.33 |
| 수익률변동성 | 16.09 | 17.66 | 17.83 | 19.35 | 19.45 |
| 종류CF(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등) | 12.47 | -6.54 | 9.94 | 8.05 | 8.00 |
| 비교지수 | 6.07 | -9.68 | 7.13 | 2.58 | 1.31 |
| 수익률변동성 | 16.09 | 17.66 | 17.83 | 19.35 | 18.81 |
| 종류CW(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 12.51 | -6.51 | 9.97 | 8.08 | 3.53 |
| 비교지수 | 6.07 | -9.68 | 7.13 | 2.58 | 1.33 |
| 수익률변동성 | 16.09 | 17.66 | 17.83 | 19.35 | 19.45 |
| 종류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 12.26 | -6.73 | 9.72 | 7.84 | 3.26 |
| 비교지수 | 6.07 | -9.68 | 7.13 | 2.58 | 1.33 |
| 수익률변동성 | 16.09 | 17.66 | 17.83 | 19.35 | 19.45 |
| 종류C-P(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11.74 | -7.17 | 9.21 | 7.34 | 2.75 |
| 비교지수 | 6.07 | -9.68 | 7.13 | 2.58 | 1.33 |
| 수익률변동성 | 16.09 | 17.66 | 17.83 | 19.35 | 19.45 |
| 종류C-P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11.85 | -7.07 | 9.32 | 7.44 | 2.81 |
| 비교지수 | 6.07 | -9.68 | 7.13 | 2.58 | 1.61 |
| 수익률변동성 | 16.09 | 17.66 | 17.83 | 19.35 | 19.47 |
| 종류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 12.32 | -6.67 | 9.78 | 7.90 | 3.29 |
| 비교지수 | 6.07 | -9.68 | 7.13 | 2.58 | 1.33 |
| 수익률변동성 | 16.09 | 17.66 | 17.83 | 19.35 | 19.45 |

| | | | | | |
|---|---|---|---|---|---|
| 종류C-Pe2(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12.18 | -6.80 | 9.64 | 7.76 | 7.47 |
| 비교지수 | 6.07 | -9.68 | 7.13 | 2.58 | 1.23 |
| 수익률변동성 | 16.09 | 17.66 | 17.83 | 19.35 | 18.92 |
| 종류C-Pe(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12.13 | -6.83 | 9.60 | 7.72 | 7.90 |
| 비교지수 | 6.07 | -9.68 | 7.13 | 2.58 | 1.69 |
| 수익률변동성 | 16.09 | 17.66 | 17.83 | 19.35 | 19.01 |
| 종류S-P2(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 12.33 | -6.66 | 9.79 | | 16.12 |
| 비교지수 | 6.07 | -9.68 | 7.13 | | 12.44 |
| 수익률변동성 | 16.09 | 17.66 | 17.83 | | 17.73 |

주1) 비교지수 : [KOSPI 대형주지수] x 30% + [KOSPI중형주지수 x (W*) + KOSPI소형주지수 x (1-W)] x 7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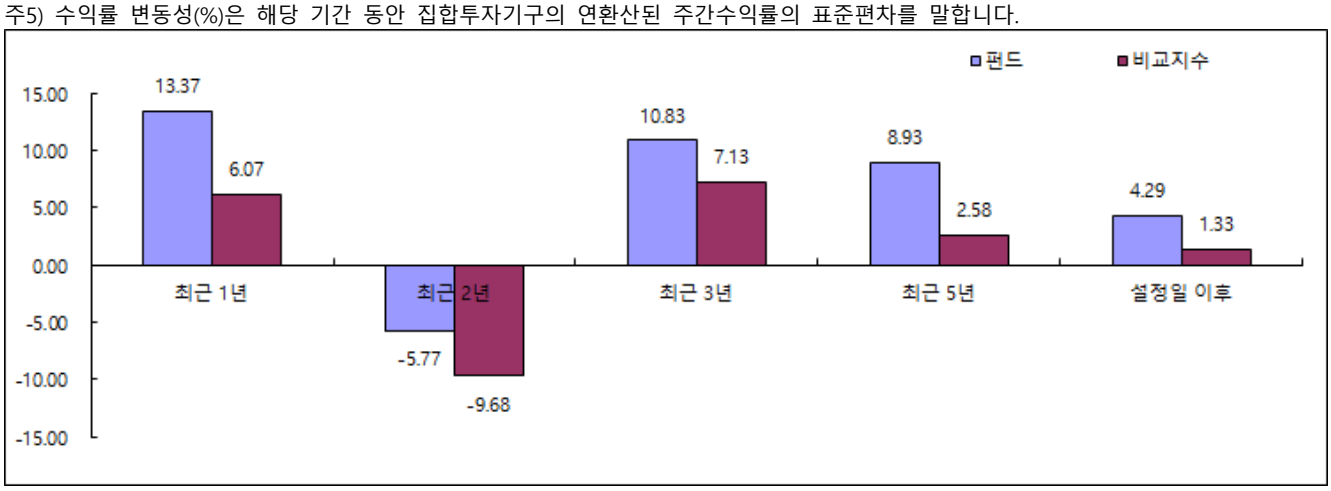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기간 | 최근 1 년차 | 최근 2 년차 | 최근 3 년차 | 최근 4 년차 | 최근 5 년차 |
|---|---|---|---|---|---|
| | 22.07.22 ~ 23.07.21 | 21.07.22 ~ 22.07.21 | 20.07.22 ~ 21.07.21 | 19.07.22 ~ 20.07.21 | 18.07.22 ~ 19.07.21 |
| KCGI 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주식] | 13.37 | -21.69 | 53.32 | 21.24 | -7.04 |
| 비교지수 | 6.07 | -23.09 | 50.72 | 2.27 | -9.66 |
| 종류A(수수료선취-오프라인) | 11.85 | -22.80 | 51.30 | 19.58 | -8.32 |
| 비교지수 | 6.07 | -23.09 | 50.72 | 2.27 | -9.66 |
| 종류Ae(수수료선취-온라인) | 12.18 | -22.56 | 51.73 | 19.93 | -8.04 |
| 비교지수 | 6.07 | -23.09 | 50.72 | 2.27 | -9.66 |
| 종류C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11.25 | -23.23 | 50.51 | 18.96 | -8.82 |
| 비교지수 | 6.07 | -23.09 | 50.72 | 2.27 | -9.66 |
| 종류C3(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11.64 | -22.95 | 51.06 | 19.35 | -8.44 |
| 비교지수 | 6.07 | -23.09 | 50.72 | 2.27 | -9.66 |
| 종류C4(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 11.74 | -22.88 | 51.15 | 19.46 | -8.42 |
| 비교지수 | 6.07 | -23.09 | 50.72 | 2.27 | -9.66 |
| 종류Ce(수수료미징구-온라인) | 11.96 | -22.72 | 51.44 | 19.69 | -8.22 |

| | | | | | |
|---|---|---|---|---|---|
| 비교지수 | 6.07 | -23.09 | 50.72 | 2.27 | -9.66 |
| 종류CI(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 12.45 | -22.36 | 52.10 | 20.23 | -7.82 |
| 비교지수 | 6.07 | -23.09 | 50.72 | 2.27 | -9.66 |
| 종류CF(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등) | 12.47 | -22.34 | 52.12 | 20.25 | -7.80 |
| 비교지수 | 6.07 | -23.09 | 50.72 | 2.27 | -9.66 |
| 종류CW(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 12.51 | -22.32 | 52.17 | 20.29 | -7.77 |
| 비교지수 | 6.07 | -23.09 | 50.72 | 2.27 | -9.66 |
| 종류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 12.26 | -22.50 | 51.84 | 20.01 | -7.98 |
| 비교지수 | 6.07 | -23.09 | 50.72 | 2.27 | -9.66 |
| 종류C-P(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11.74 | -22.88 | 51.15 | 19.46 | -8.42 |
| 비교지수 | 6.07 | -23.09 | 50.72 | 2.27 | -9.66 |
| 종류C-P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11.85 | -22.80 | 51.30 | 19.58 | -8.32 |
| 비교지수 | 6.07 | -23.09 | 50.72 | 2.27 | -9.66 |
| 종류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 12.32 | -22.46 | 51.92 | 20.09 | -7.93 |
| 비교지수 | 6.07 | -23.09 | 50.72 | 2.27 | -9.66 |
| 종류C-Pe2(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12.18 | -22.56 | 51.73 | 19.93 | -8.05 |
| 비교지수 | 6.07 | -23.09 | 50.72 | 2.27 | -9.66 |
| 종류C-Pe(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12.13 | -22.59 | 51.67 | 19.88 | -8.08 |
| 비교지수 | 6.07 | -23.09 | 50.72 | 2.27 | -9.66 |
| 종류S-P2(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 12.33 | -22.45 | 51.93 | | |
| 비교지수 | 6.07 | -23.09 | 50.72 | | |

주1) 비교지수 : [KOSPI 대형주지수] x 30% + [KOSPI중형주지수 x (W*) + KOSPI소형주지수 x (1-W)] x 7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8) 연도별수익률정보는 신고서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과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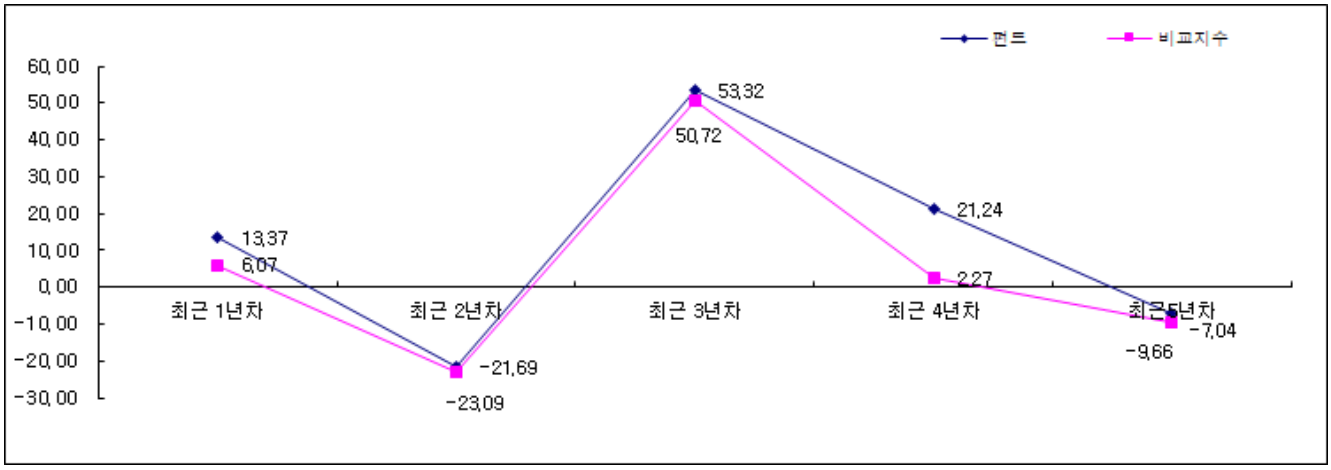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 2023.05.31 현재 / 단위 : 억원,%]

| 통화별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총액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투자증권 | 장내 | 장외 | | 실물자산 | 기타 | | | |
| KRW | 1,031 | 0 | 0 | 0 | 0 | 0 | 0 | 0 | 0 | 4 | 110 | 1,145 |
| | (90.04)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37) | (9.59) | (100.00) |
| 합계 | 1,031 | 0 | 0 | 0 | 0 | 0 | 0 | 0 | 0 | 4 | 110 | 1,145 |
| | (90.04)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37) | (9.59) | (100.00) |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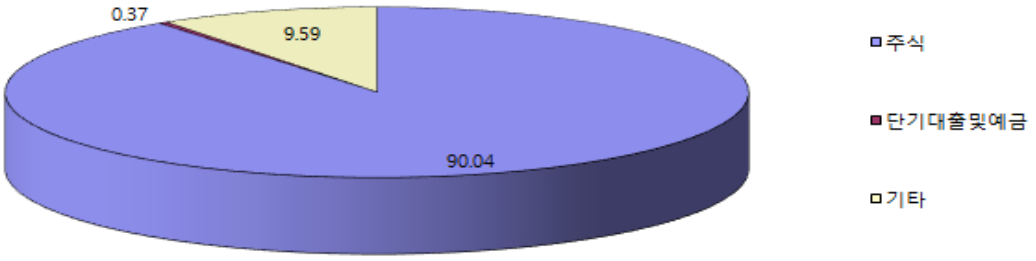


*국내 주식 업종 별 구성 현황

[ 2023.05.31 현재 / 단위 : 억원,%]

| | 업종명 | 평가액 | 보유비율 |
|---|---|---|---|
| 1 | 반도체 | 202 | 19.6 |
| 2 | 화학 | 136 | 13.2 |
| 3 | 서비스업 | 121 | 11.7 |
| 4 | 의료,정밀기기 | 102 | 9.9 |
| 5 | 화학 | 95 | 9.2 |
| 6 | 유통업 | 60 | 5.8 |
| 7 | 오락,문화 | 50 | 4.8 |
| 8 | 전기,전자 | 48 | 4.6 |
| 9 | 교육서비스 | 36 | 3.5 |
| 10 | 기계,장비 | 26 | 2.6 |
| 11 | 기타 | 154 | 15.0 |
| 합 계 | | 1,031 | 100.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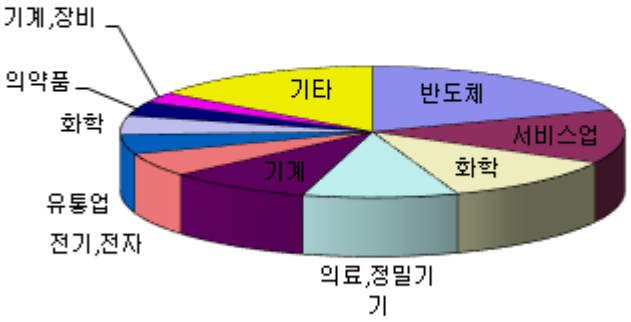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투자자 및 집합투자기구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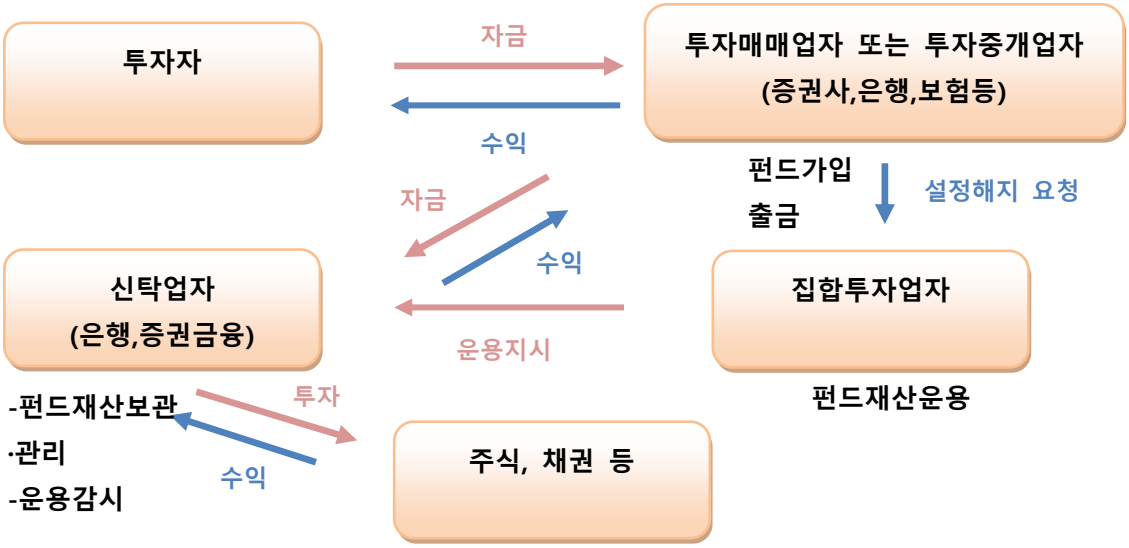


## 1. 집합투자업자의 관한 사항

### 가. 회사개요

| | |
|---|---|
| 회사명 |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One IFC 15층<br>TEL)02-6320-3000 http://www.kcgiam.com/ |
| 회사연혁 | 2008. 5 회사설립<br>2008. 7 자산운용업 본허가<br>2008. 7 메리츠종금 영업양수<br>2009.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인가<br>2010. 3 자본금 50억원 증자<br>2013.12 자본금 감소 무상감자(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br>2015.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br>2023. 8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주)로 상호변경<br>*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 자본금 | 132.3억원 |
| 주요주주현황 | ㈜케이씨지아이 60%, 화성산업㈜ 40% |

###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집합투자기구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

(2) 선관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요약 재무상태표>

| 구 분 | 제 15기말<br>2022.12.31 | 제 14기말<br>2021.12.31 |
|---|---|---|
| **자산총계** | **68,953** | **78,342** |
| **- 현금및예치금** | **44,034** | **48,873** |
| **- 유가증권** | **19,569** | **22,877** |
| **- 이연법인세자산** | **2,549** | **2,048** |
| **- 기타자산** | **2,801** | **4,544** |
| • 미수수익 | 1,861 | 2,217 |
| • 무형자산 | **70** | **389** |
| • 기 타 | 870 | 1,938 |
| **부채총계** | **34,688** | **42,251** |
| • 예수부채등 | 34,688 | 42,251 |
| **자본총계** | **34,265** | **36,091** |
| - 자본금 | 13,230 | 13,230 |
| - 자본조정 | -74 | -74 |
| - 기타포괄손익 | -307 | -344 |
| - 이익 잉여금 | 21,416 | 23,279 |
| **당기순이익** | **-1,862** | **4,241** |

* 상기 요약 재무제표는 K-IFRS기준으로 작성함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백만원)

| 구 분 | 제15기<br>2022.01.01~<br>2022.12.31 | 제14기<br>2021.01.01~<br>2021.12.31 |
|---|---|---|
| **영업수익** | **14,161** | **20,276** |
| - 자산관리수수료 | 394 | 1,618 |
| - 집합투자기구운용보수 | 10,325 | 12,906 |
| - 집합투자증권취급수수료 | **1,451** | **1,123** |
| - 유가증권매매익 | 1,302 | 4,413 |
| - 이자수익 등 | 689 | 216 |
| **영업비용** | **16,550** | **15,046** |
| - 임직원급여 | 4,320 | 8,155 |
| - 복리후생비 | 739 | 795 |
| - 건물임차료 | 116 | 55 |
| - 전산운용비 | 1,156 | 1,029 |
| - 기타제비용 | 10,219 | 5,012 |
| **영업이익** | **-2,389** | **5,230** |
| **영업외손익** | **9** | **8** |
| **세전이익** | **-2,379** | **5,238** |
| **법인세비용** | **-517** | **997** |
| **당기순이익** | **-1,862** | **4,241** |
| **당기총포괄이익** | **-1,825** | **4,202** |

라. 운용자산규모

(2023. 7. 21 현재/ 단위: 억원)

| 구분 | 증권집합투자기구 | | | | | | | 부동산및 부동산파생 | 특별자산및 특별자산파생 | 혼합자산및 혼합자산파생 | 단기금융 | 총 계 |
|---|---|---|---|---|---|---|---|---|---|---|---|---|
| | 주식형 | 채권형 | 혼합형 | 계약형 | 재간접형 | 파생형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수탁고** | 7,802 | 384 | 1,979 | 0 | 4,790 | 2,911 | 0 | 122 | 8,677 | 980 | 0 | 27,645 |

##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신탁업자 : 해당사항없음

나. 기타 업무의 신탁업자 : 해당사항없음

##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회사개요

| | |
|---|---|
| 회 사 명 | 신한은행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br>☏ 02) 1599-8000 http://www.shinhan.com |
| 회사연혁 | 1897. 2 한성은행(조흥은행 전신)창립<br>1982. 7 신한은행 창립(최초 영업개시)<br>2006. 4 구)신한은행과 구)조흥은행의 합병을 통해 통합 신한은행 출범<br>*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2)주요업무

①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선관의무 및 충실의 의무

-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신탁업자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집합투자업자의 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④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⑤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회사개요

| | |
|---|---|
| 회 사 명 | ㈜신한펀드파트너스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br>☏ 02) 2168 – 0400 www.shinhanfundpartners.com |
| 회사연혁 | 2000. 6 법인설립<br>2008. 5 신한은행 자회사로 편입<br>*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2)주요 업무

① 주요업무

-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② 의무와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개요

| 회사명 | 한국자산평가 | NICE피앤아이 | KIS채권평가 | 에프앤자산평가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88(운니동 9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여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여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 | | | | |
|---|---|---|---|---|
| | 5)<br>T.02-399-3350 | 도동)<br>T.02-398-3900 | 의도동)<br>T.02-3215-1400 | T.02-769-7700 |
| 회사연혁등<br>(홈페이지 참조) | www.koreaap.com | www.nicepni.com | www.bond.co.kr | www.fnpricing.com |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자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1) 이 집합투자기구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2)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3)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에게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투자자총회의 소집

1)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개최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3)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ㄱ)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ㄴ)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ㄷ)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ㄹ)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3)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4)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1)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2)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2)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ㄱ)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ㄴ)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ㄷ)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나.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ㄹ)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ㅁ)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ㅂ)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1)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ㄱ)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ㄴ)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등 등·초본 교부청구권

1) 수익자는 신탁업자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와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신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는 관련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수익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 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주소지 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에서 열람하거나 복사 등 할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의 3) 내지 4)의 사유로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3) 내지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이내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증권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손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인 매매회전율

2)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에 해당하는 투자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1)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2) 신탁업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위와 같은 사유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금융

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 합니다.

3) 신탁업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합니다.

4)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신탁업자가 부담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및 법시행령 제 245 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 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 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
- 투자신탁의 명칭
- 투자대상자산(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함)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수익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신탁계약의 변경과 해지에 관한 사항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산별 취득한도, 취득한도 초과시 해소방법 및 해소기한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집합투자업자(www.kcgiam.com),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 89조 및 시행령 제93조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른 변경,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

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법 89조 및 시행령 제93조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른 변경,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도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 이하 이 호 및 9호에서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그 밖에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평가항목 및 배점기준</td><td>투자중개업자 선정 시 각 자산에 대한 평가항목은 조사분석서비스와 매매체결서비스로 분류하며, 운용담당부서에서 항목별 배점기준을 두어 평가한다.
<table>
<tr><th>구 분</th><th>조사분석서비스</th><th>매매체결서비스</th></tr>
<tr><td>배점기준</td><td>70%</td><td>30%</td></tr>
</table></td></tr>
<tr><td>평가방법</td><td>① 당사의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침」에 의한 조사분석서비스평가위원회에서 투자중개업자를 평가・선정한다. 이 경우 각 운용담당부서에서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해당 임직원 중에서 평가위원을 정한다.<br>② 조사분석서비스평가위원회의 평가, 선정은 분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평가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br>③ 당사는 거래 투자중개업자를 적절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td></tr>
</table>

주1) 2018.1.2에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투자현황>

| | 투자목적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투자금 회수계획 |
|---|---|---|---|---|
| | 고유자금 운용 | 2015-06-01~현재 | 약 6.5억원 | 별도 회수 계획 없음 |
| | | 2016-10-27~현재 | 20억원 | |

<회수현황>

| | 투자목적 | 투자기간 | 투자회수금액 |
|---|---|---|---|
| | 고유자금 운용 | 2015-06-01~2018-11-05 | 약 13.5억 |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참고 - 펀드용어정리

| | |
|---|---|
| **개방형(집합투자기구)** | 투자자가 원할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
| **금융투자상품** |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 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 **모자형(집합투자기구)** |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
| **종류형** |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
| **배당소득** | 펀드운용시 증권(주식·채권 등)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
| **보수 또는 총보수**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판매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판매 및 관리 등 집합투자증권 매입, 환매 및 투자기간 중 지속적으로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고객의 지불하는 비용으로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성과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비교지수** |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
| **수익자총회<br>(집합투자자총회)** |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며,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름니다 |
| **수익증권<br>(집합투자증권)** |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순자산** |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합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자본이득** | 펀드운용시 증권(주식·채권 등)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차익을 말합니다. |
| **증권집합투자기구** |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 **한국금융투자협회<br>펀드코드**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 **해지** |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환매수수료** |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 |

| | |
|---|---|
| | 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
| **환매조건부채권** |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